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(안)

심사 보고서

2005. 9.

행정위원회

1. 審查經過.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년 8월 25일 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05년 9월 2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2005년 9월 5일

제115회(임시회) 제1차 행정위원회 상정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정진)

가. 개정이유

-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체육시설업 신고·변경 수수료를 우리구 수수료징수조례에 징수 근거조항을 만들어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며,
- 종전 시행되었던 거주에 관한 증명 발급이 주민등록 등·초본발급으로 대체된 이후 불필요한 일부 규정을 삭제함으로서 관련법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체육시설업 신고에 관한 사항 <신설>
 - 체육시설업 1건 20,000원
 - 체육시설업 변경 1건 10,000원
- 거주에 관한 증명 <삭제>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(수수료 자치구 위임)
 - 서울시 행정과-6211(2004.6.4)호(수수료징수조례증 거주에 관한증명 삭제)

3.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(專門委員 김찬재)

가. 제증명 확인발급사항 중 마목 거주에 관한 증명 삭제에 대하여

- 거주에 관한 증명은 1955. 4. 18부터 1962. 6. 24까지의 등적부에 의한 주거 기록과 1962. 6. 25부터 1968. 10. 19까지 구 주민등록표에 의한 주거기록을 공부대조 후 증명발급해 주는 것으로,
- 서울시에서는 1981. 6. 19 거주에 관한 증명을 발급하지 말고 주민등록법 시행이전의 거주사실 증명은 공증인의 공정증서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할 것을 시달한 바 있고, 2004. 6. 4에는 조례 및 민원사무편람을 정비할 것을 권유한 바 있으며, 이에 따라 10개구에서는 삭제조치 하였으며,
- 거주에 관한 증명사항의 삭제안은 적기에 개정하지 못하였으나 본 조례안대로 삭제시 분쟁발생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.

나. 체육시설업 신고에 관한 사항의 수수료 신설은

-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가 1999. 1. 18 개정되어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종전 시·도지사에서 시장, 군수, 구청장에게 하도록 변경되고, 2000. 3. 28 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서 수수료를 시·군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구 조례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, 2002. 5. 7 서울시로 부터 신고 체육 시설업 수수료 징수조례 정비통보가 있었으며,
- 제안된 수수료 20,000원은 대부분 5,000원인 타 자치구에 비하면 현격히 높으나 원가를 수수료에 반영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되며, 유사수수료인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20,000원, 기타 유원시설업 영업신고 30,000원임.
- 다만, 동 수수료에 대한 우리구의 원가분석 자료에 의하면 수수료의 원가는 22,878원으로, 이는 산출시 민원처리 소요시간을 175분을 적용한 데 따른 것이나 관내 출장시 평균적으로 왕복 40분정도 소요되고 20분정도면 현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, 문서작성 접수시간 등 20분을 감안하면 총 8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, 추정 소요시간 80분을 적용할 경우 수수료의 원가는 10,294원임.

4. 審查結果 : 原案可決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7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5. 8.
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체육시설업 신고·변경 수수료를 우리구 수수료징수조례에 정수 근거조항을 만들어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며,
- 종전 시행되었던 거주에 관한 증명 발급이 주민등록 등·초본발급으로 대체된 이후 불필요한 일부 규정을 삭제함으로서 관련법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체육시설업 신고에 관한 사항 <신설>

- 체육시설업 1건 20,000원
- 체육시설업 변경 1건 10,000원

나. 거주에 관한 증명 <삭제>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(수수료 자치구 위임)
- 서울시 행정과-6211(2004.6.4)호(수수료징수조례증 거주에 관한증명 삭제)

나. 합의사항 : 필요없음

다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라. 입법예고 : 2005. 7. 15 ~ 2005. 8. 5(20일간) → 의견없음

따로붙임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 개정(안) 1부. 끝.

서울특별시영동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동포구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영동포구수수료징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[별표] 1.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중“(18종)”을 “(17종)”으로 하고, 종목 중 마목
(3)거주에 관한 증명을 삭제한다.

[별표] 2.각종 인·허가 및 신고사항 중 “(44종)”을 “(46종)”으로 하고 마목 란 다음
바목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각종 인·허가 및 신고사항(46종)

종 목	단위	수수료액	비고
바. 체육시설업 신고에 관한 사항			
(1) 체육시설업	1건	20,000원	
(2) 체육시설업 변경	1건	10,000원	

부 .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												
<p>[별표]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</p> <p>1.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(18종)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종 목</th><th>단위</th><th>수수료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마. 주소, 신상 및 직무에 관한 사항 (1) ~ (2) (생략) <u>(3) 거주에 관한 증명</u></td><td>1건</td><td>500</td></tr> </tbody> </table>	종 목	단위	수수료	마. 주소, 신상 및 직무에 관한 사항 (1) ~ (2) (생략) <u>(3) 거주에 관한 증명</u>	1건	500	<p>[별표]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</p> <p>1.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(17종)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종 목</th><th>단위</th><th>수수료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마. 주소, 신상 및 직무에 관한 사항 (1) ~ (2) (현행과 같음) <u>작정</u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/tbody> </table>	종 목	단위	수수료	마. 주소, 신상 및 직무에 관한 사항 (1) ~ (2) (현행과 같음) <u>작정</u>		
종 목	단위	수수료											
마. 주소, 신상 및 직무에 관한 사항 (1) ~ (2) (생략) <u>(3) 거주에 관한 증명</u>	1건	500											
종 목	단위	수수료											
마. 주소, 신상 및 직무에 관한 사항 (1) ~ (2) (현행과 같음) <u>작정</u>													
<p>2. 각종 인·허가 및 신고사항(44종)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종 목</th><th>단위</th><th>수수료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마. (생략) 바. <신설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/tbody> </table>	종 목	단위	수수료	마. (생략) 바. <신설>			<p>2. 각종 인·허가 및 신고사항(46종)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종 목</th><th>단위</th><th>수수료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마. (현행과 같음) 바. 제육시설업 신고에 관한 사항 (1) 제육시설업 (2) 제육시설업 변경</td><td>1건 1건</td><td>20,000 10,000</td></tr> </tbody> </table>	종 목	단위	수수료	마. (현행과 같음) 바. 제육시설업 신고에 관한 사항 (1) 제육시설업 (2) 제육시설업 변경	1건 1건	20,000 10,000
종 목	단위	수수료											
마. (생략) 바. <신설>													
종 목	단위	수수료											
마. (현행과 같음) 바. 제육시설업 신고에 관한 사항 (1) 제육시설업 (2) 제육시설업 변경	1건 1건	20,000 10,000											